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48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황운하 · 차규근 · 백선희
정혜경 · 윤종오 · 이훈기
김재원 · 용혜인 · 신장식
이해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항고(30일 이내) 및 재정신청(10일 이내)과 달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소인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의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인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이의신청은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와 형사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

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고 형사사법 불복 절차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해당 사법경찰관의”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u>해당 사법경찰관의</u>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 ----- -- <u>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u> <u>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